

	산학협력단 여비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9. 4. 28.
		최종개정일자	2014. 6. 11.
		담당부서	산학협력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서 공무 수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산학협력단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 · 일비 · 숙박비 ·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여비는 <별표 1>(여비지급 구분 표)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4조(여비의 계산)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·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

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

제5조(여행일수의 계산) 공무수행 일수는 공무를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·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.

제5조의 2(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)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,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10분의 3에 상당액을,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4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<신설 2011.4.29>

제2장 운 임

제6조(운임의 구분) ①운임은 철도운임 · 선박운임 · 항공운임 ·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,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,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,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,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.

제7조(철도운임의 지급) ①국내 철도운임은 <별표 2>(국내여비 지급표)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

제8조(선박운임의 지급) ①국내 선박운임은 <별표 2>(국내여비 지급표)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

제9조(항공운임의 지급) ①국내 항공운임은 <별표 2>(국내여비 지급표)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

②국외 항공운임은 <별표 3>(국외항공운임 정액표)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

이를 지급한다.

제10조(자동차운임의 지급) 국내 자동차운임은 <별표 2>(국내여비 지급표)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

제11조(실비운임) 국내 공무수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 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임지급의 제한) 관용의 차량 .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장 일비 · 숙박비 및 식비

제13조(일비 · 숙박비 · 식비의 지급)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 · 숙박비 및 식비는 여비규정 <별표 2>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.

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,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

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천재 ·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.

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

제14조(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)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또는 20km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, 4시간 미만 또는 20km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지급한다.<개정 2011.4.29>

② 제1항에서 “근무지 내 국내 출장”이란 같은 시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 군 및 섬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<개정 2014.6.11>

제15조(여비의 조정) 산학협력단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〈개정 2014.6.11〉

여비지급 구분표(제3조 관련)

구 분	해 당 교 직 원
제1호	총장, 부총장
제2호	교수, 부교수, 행정직원 (5급 이상)
제3호	조교수, 행정직원 (5급 이하)

〈별표 2〉〈개정 2014.6.11〉

국내여비 정액표(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일비 (1인당)	숙박비 (1인당)	식비 (1일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 비	실 비	20,000	실 비	25,000
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 비	실 비	20,000	실비 (상한액:특별시 및 광역 시 50,000. 그 밖의 지역 은 40,000)	20,000
제3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3등급)	실 비	실 비	20,000	40,000	20,000

비고: 자동차 운임은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한다.

〈별표 3〉〈개정 2014.6.11〉

국외항공운임 정액표 (제9조 제2항관련)

구 분	항 공 운 임
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하는 사람	1등석 정액
기타의 사람	2등석 정액

국외 여비 지급표 (제9조 제2항 관련)

구분	등급	일비	숙박비	식비
1.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	가	60	실비(상한액: 471)	186
	나	60	실비(상한액: 422)	136
	다	60	실비(상한액: 233)	102
	라	60	실비(상한액: 200)	85
2. 별표 1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	가	50	실비(상한액: 389)	160
	나	50	실비(상한액: 289)	117
	다	50	실비(상한액: 185)	87
	라	50	실비(상한액: 149)	73
3. 별표 1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	가	40	실비(상한액: 282)	133
	나	40	실비(상한액: 207)	99
	다	40	실비(상한액: 139)	72
	라	40	실비(상한액: 100)	61
4.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	가	35	실비(상한액: 223)	107
	나	35	실비(상한액: 160)	78
	다	35	실비(상한액: 112)	58
	라	35	실비(상한액: 79)	49
5.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	가	30	실비(상한액: 176)	81
	나	30	실비(상한액: 137)	59
	다	30	실비(상한액: 91)	44
	라	30	실비(상한액: 75)	37
6. 별표 1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	가	26	실비(상한액: 155)	67
	나	26	실비(상한액: 123)	49
	다	26	실비(상한액: 77)	37
	라	26	실비(상한액: 71)	30

※ 비고

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 등급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

나. 나 등급

1) 아시아주 · 오세아니아주 : 타이완, 베이징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파푸아뉴기니

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
3) 유럽주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
4) 중동 · 아프리카주 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수단, 남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카타르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 등급

1) 아시아주 · 오세아니아주 : 뉴질랜드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기즈공화국, 타이, 터키, 파키스탄

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앤티가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

3) 유럽주 :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슬로베니아, 마케도니아, 체코, 폴란드

4) 중동 · 아프리카주 : 가나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모로코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바레인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에티오피아, 요르단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 등급

1) 아시아주 · 오세아니아주 : 네팔, 라오스, 미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, 필리핀

2) 남 · 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
3) 유럽주 : 몰도바,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

4) 중동 · 아프리카주 : 감비아, 기니비사우, 기니, 나미비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리타니, 소말리아, 알제리, 예멘, 이라크, 이란, 잠비아, 짐바브웨, 튀니지.